

NEWSLETTER 830

May 26, 202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 등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환급후 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 23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6④)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
-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제6조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32①)

-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현 행	개 정
<p>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p> <p>② ~ ⑧ (생략)</p>	<p>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3. 기타 개정

-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 (§25③), 명기 → 작성(별지1)

현 행	개 정
<p>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 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p> <p>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선박(항공기)의 톤수·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p>	<p>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p> <p>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선박(항공기)의 톤수·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p>

III. 시행일자

- 2023년 0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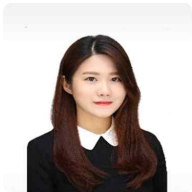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붙임 3\] 개정전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o@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T 051-462-8278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